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. 5. 9 선고 2022가단5904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1.

판 결 선 고 2023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2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21. 12. 7. C에게 변제기를 2022. 7. 6., 이자를 연 20%로 정하여 4,0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(이하 ‘이 사건 차용금 채무’라 한다)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4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. 12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에게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보증하였고 C에게 변제의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런데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원칙이므로, 원고와 피고가 보증계약에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22. 7. 6.로 정한 이상 보증채무의 변제기 또한 2022. 7. 6.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.

나아가 C에게 변제의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민법 제437조가 정한 최고,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, 보증인의 최고,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주채무자인 C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함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

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강문희